

국무조정실 공고 제2019-40호

국무조정실(조세심판원) 기간제근로자 채용 공고

국무조정실(조세심판원)에서는 기간제근로자를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 하오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 바랍니다.

2019년 4월 15일
국무조정실장

1. 선발개요

채용구분	인원	주요담당업무	근무예정부서
기간제근로자	0명	심판청구 접수 및 처리 보조업무	국무조정실 조세심판원 (세종특별자치시)

2. 근무조건

- 계약기간 : '20. 5. 31까지
- 보 수 : 국무조정실·국무총리비서실 내부 운영지침에 따름
 - 2019년 국무조정실 기간제 근로자 기본급 및 수당
 - ※ 월 175만원 내외
 - ※ 4대 보험(건강보험, 국민연금, 고용보험, 산재보험) 의무가입
(보험료는 월 보수액에서 차감)
- 근무지 : 정부세종청사 2동 조세심판원
- 근무시간 : 주 5일, 1일 8시간

3. 응시자격 및 우대조건

○ 기본요건

가. 「국가공무원법」 제33조 각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

- ①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
- ②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
- ③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- ④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- ⑤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
- ⑥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
- ⑦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「형법」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- ⑧ 「형법」 제303조 또는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- ⑨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- ⑩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
나.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

다. 「공무원임용령」(별표 4의2)의 한시임기제공무원 9호 임용자격기준을 충족하는 자

라. 대한민국 국적인 자(복수국적자는 외국국적을 포기하여야 함)

마. 남자의 경우 병역의무를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

바. 응시연령 :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만 18세 이상인 자

사. 최종합격자 발표 및 신원조사 후 즉시 근무 가능한 자

○ 응시자격요건

구 분	응시자격 요건
필수요건	• 가~사 항목 충족자
우대조건	• 장애인 • 한글, 엑셀 등 S/W 활용이 능숙한 자

4. 채용일정

구 분	일 정	비 고
모집공고	'19. 4. 15(월) ~ '19. 4. 24(수)	· 인사혁신처 나라일터, 국무조정실·국무총리비서실 홈페이지 게시 등
원서접수	'19. 4. 15(월) ~ '19. 4. 24(수)	· 전자우편
서류전형 합격자 발표	'19. 4. 26(금) 예정	· 합격자 개별통보 (18:00경) (불합격자에게는 별도 통보 없음)
면접심사	'19. 4. 29(월) 또는 '19. 4. 30(화) 예정	· 면접시간 및 장소는 서류전형합격자 개별통보시 별도 안내
최종합격자 발표	'19년 5월 중	· 국무조정실·국무총리비서실 홈페이지 게시

5. 원서접수

① 접수기간 : 2019. 4. 15(월) ~ 2019. 4. 24(수)

② 접수방법 : 전자우편접수

③ 전자우편 : keii1211@korea.kr

※ 응시원서는 **접수기간 마감일 18:00까지 메일 도착분**에 한하여 유효함

6. 제출서류

- ① 응시원서 1부 : 【별지서식 1】
- ② 자기소개서 1부 : 【별지서식 2】
- ③ 장애인 증명서 1부(해당자에 한함)
- ④ 자격증 사본 1부 (해당자에 한함)
- ⑤ 경력증명서 1부 (해당자에 한함)

※ 경력증명서상 ① 담당업무, ② 근무기간(년월일), ③ 직위·직급, ④ 전임 여부
구체적으로 명시 필요

- ⑥ 최종학교졸업(예정)증명서 1부
- ⑦ 개인정보 제공 및 이용 동의서 : 【별지서식 3】

※ 서류제출 주의사항

- 가. 제출 서류 중 ①, ②, ⑦번 서류의 경우, 반드시 서명하여 제출
(반드시 서명된 컬러스캔파일을 제출)
- 나. 응시원서에 작성한 사항 중 ③~⑥의 서류에 의해 증빙되지 않은 사항은
심사 시 불인정
- 다. 모든 제출서류는 응시마감일 기준 6개월 이내에 발급된 것이어야 함

7. 유의사항

- ① 응시원서 등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,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.
- 각종 구비서류는 반드시 원서접수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.
- ② 접수된 응시원서 등 일체의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, 기재사항은 수정할 수 없습니다.
- ③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시험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자는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며,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.

- ④ 최종합격자로 결정되더라도, 신원조사 등에서 부적격으로 판명될 경우 임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.
- ⑤ 응시자 중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.
- ⑥ 근로계약포기, 합격취소, 결격사유 등으로 최종합격자가 임용되지 못하는 경우에 대비하기 위하여 예비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.
- ⑦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세심판원 행정실(☎ 044-200-1713)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